

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. 5. 9 선고 2013가단1343(본소), 2013가단1756(반소) 판결
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· 소유권이전등기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A

피고(반소원고)B

변론 종결 2014. 4. 16.

판결 선고 2014. 5. 9.

주 문

1. 원고(반소피고)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.
2. 원고(반소피고)는 피고(반소원고)에게 강원 고성군 C 대 345m² 중 별지 도면2 표시 19, 6, 7, 8, 11, 12, 18,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 64m²에 관하여 2004. 12. 28.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본소, 반소를 합하여 원고(반소피고)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1. 본소

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 한다)에게 강원 고성군 C 대 345m² 중 별지 도면1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건물을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라.

2. 반소

주문 제2항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 제1호증, 을 제1, 7, 8호증(가지번호 포함.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.

가. 강원 고성군 C 대 345m²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에 관하여는 1986. 12. 17. E 명의로, 1992. 6. 13. E의 처인 F 명의로, 1997. 5. 7. 다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상태에서, 2000. 3. 9. E의 동생인 원고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나. 피고는 남편인 망 G(이하 '망인'이라 한다)과 함께 1984. 12. 28.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2 표시 19, 6, 7, 8, 11, 12, 18,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 64m²(이하 '이 사건 (나) 부분 토지'라 한다) 지상에 주택(이하 '이 사건 주택'이라 한다)을 소유하며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.

다. 한편, '이 사건 토지 중 15평은 망인 소유'라는 취지로 작성된 E 명의의 확인서(을 제1호증, 이하 '이 사건 확인서'라 한다)가 존재하는데(위 확인서에 날인된 E 이름 옆의 인영은 E의 인감도장의 인영과 다르지만 한자는 동일하다), 원고는 피고가 이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피고를 형사 고소하였으나, 수사 과정에서 피고의 주장대로 당시 강원 고성군 H 이장이었던 망 I가 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감정결과가 나오자 피고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.

2.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, 위 주택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1) 피고는, 피고가 이 사건 (나) 부분 토지를 20년 동안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,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1984. 12. 28.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며 이 사건 (나) 부분 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, 피고가 점유를 개시한 1984. 12. 28.부터 20년이 되는 2004. 12. 28. 피고의 이 사건 (나) 부분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.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.

2) 이에 대하여 원고는, 이 사건 확인서는 위조된 것이고, E나 원고의 모친 F 등이 피고에게 이를 매수하라고 하였는데 피고가 돈이 없어서 이를 매수할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므로, 피고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이 사건 확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, 오히려 을 제8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E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을 철거하라거나 토지를 매수하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. 또한 E와 원고의 모친 F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라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반복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, 피고가 '돈이 없어서 이를 매수할 수 없다'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. 그 밖에 갑 제3 내지 5호증의 기재 또는 증인 J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반소에 대한 판단

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, 1984. 12. 28.부터 20년이 되는 2004. 12. 28. 피고의 이 사건 (나) 부분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,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(나) 부분 토지에 관하여 2004. 12. 28.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,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.

판사박혜림

별지